

의안번호	2210252
의 퇴 인	강승규 의원
회 답 일	2025. 7. 1.
추계번호	25B2665

농어업회의소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경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67조(전국농어업회의소의 보고의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농어업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3	안 제68조(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결과 공표 및 국회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62조(경비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7조(전국농어업회의소의 보고의무 등)	
3	안 제68조(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결과 공표 및 국회보고)	

2. 상세 사유

가. 경비 지원(안 제62조), 전국농어업회의소의 보고의무 등(안 제67조제2항)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농어업회의소¹⁾는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분되며, 주요업무 및 관할구역 등은 다음과 같음

[표 1] 기초·광역·전국농어업회의소의 주요 사업 및 관할구역 등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사업 (안 제4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3.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조사·연구 5. 농림어업·농산어촌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6.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대(附帶)되는 업무		
관할구역 (안 제6조, 제35조, 제50조)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의 행정구역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전국

-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회의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전국농어업회의소를 말한다.
- 2) 안 제11조(회원 등) ① 농림어업인은 그 농지, 사업장, 어장 또는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3) 안 제11조(회원 등) ②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5.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6.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자치구만 있는 광역시로 한정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법인
 7. 그 밖에 농림어업·농산어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고 그 업무구역이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또는 군에 속하는 단체로서, 해당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정관으로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인가 등 (안 제7조, 제36조, 제50조)	• 회원²⁾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³⁾ 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또는 1천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 •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고,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사무국 (안 제33조, 제48조, 제61조)	•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둠(사무국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전국농어업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광역농어업회의소 사무국에 관하여는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규정 준용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설치·운영 지원 및 검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설립될 유형별 농어업회의소 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지원율, 연간 검사 대상 농어업회의소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

○ 예를 들어 농어업회의소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text{추가재정소요} &= \sum_{i,t} (\text{농어업회의소 수}_{i,t} \times \text{평균 사업 경비}_{i,t} \\
 &\quad \times \text{국가 및 지자체 경비 지원율}_{i,t})
 \end{aligned}$$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농어업회의소 유형

($i=1$ 일 때 기초, $i=2$ 일 때 광역, $i=3$ 일 때 전국)

정하는 단체

- 그러나 농어업회의소는 민간의 자발적 조직으로 각 지역별 연간 설립 개소 수, 설립 지역, 국가 및 관련 지자체의 지원 여부 등 지원계획을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농어업회의소 설립 여부와 연동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 여부 또한 구체화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⁴⁾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의 설립 개소 수, 설립 지역, 지원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하다는 의견임

나. 농어업회의소 실태조사결과 공표 및 국회보고(안 제68조)

-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태조사와 관련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법 제정 이후 5년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개소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농어업회의소의 활성화 정도와 지자체 및 농어업인 등의 설립 의지 등이 지역별로 다양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향후 5개년간의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개소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에 한계가 있음

4)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회의소 설립 주체인 농업인·농업인단체와 지자체 대상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 수행중

※ [참고자료] 농업회의소 지원사업 현황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농업회의소 지원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업회의소 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업인·농업인단체 및 지자체 대상의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농업회의소 설립 기반 조성
- 사업예산: 95백만원('24년 기준, 농특회계/지자체경상보조, 국비 100%)
 - * '24년까지 사업 완료하고, '25년부터 예산 미반영
- 사업내용: 농업회의소 설립 주체인 농업인·농업인단체와 지자체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활동 지원

□ 농업회의소 지자체 추진 현황('25.6월 현재)

< 농업회의소사업 지자체 추진현황 >

년도 지역		'10	'11	'12	'15	'16	'17	'18	'19	'20	'21	'22	'23
선정	43개소	3	3	2	5	6	6	5	5	5	1	1	2
	국고 지원 (42) * 교육컨설팅 지원 * 밀집농촌지역	평창 진안 나주	고창 봉화 거창	남해 (영주*) *산청하	충남 예산 완주 의성 고성	제주 화성 아산 당진 담양 논산	평택 괴산 서산 금산 익산 영덕	춘천 장수 부여 고령 경주	속초 양양 홍성 김제 의령	안성 김포 양구 서천 태안	청도	부안	양평 태백
민간 자율 추진 (2)						정선 (자율설립)			횡성 (자율설립)				
설립완료 (27개소)		3	3	1	3	6	3	4	3	1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최근 5년간 농업회의소 지원 예·결산 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세부사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1130-331)	지원예산 없음
내역사업 (내내역)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농업경영혁신교육 내 농업회의소 역량강화)	
주요내용		농업인·농업인단체와 지자체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등 활동 지원	
2020	예산	190	
	결산	190	
2021	예산	190	
	결산	190	
2022	예산	190	
	결산	190	
2023	예산	190	
	결산	190	
2024	예산	95	
	결산	— * 사업대상 지자체 공모(2회)하였으나, 미신청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농어업회의소 설립 현황('25.2월 기준)

○ 농어업회의소 설립 현황: 27개소(기초 26, 광역 1)

구 분	선정일	설립일 (창립총회)	개인회원수 /농어업인수 * (비율%)	단체 회원수	특별 회원수	개인회비 (천원/년)	상근 직원	법인인가 /등기	사업자 등록	조례제정
강원 평창	'10.12.	'12.3.14.	1,018 / 10,822 (9.4)	26	9	30	8명	'12.5.9. /5.21.	'12.5.25.	'12.7.6.
전북 진안	'10.12.	'11.9.20.	650 / 3,457 (18.8)	15	8	30	-명	'11.10.27. /10.27.	'12.5.11.	'12.6.15.
전북 고창	'11.9.	'12.11.5.	397 / 7,947 (5.0)	8	-	36	-명	'13.1.29. /1.31.	'13.2.4.	'12.5.25.
전남 나주	'10.12.	'12.2.8.	1,482 / 10,385 (14.3)	48	16	36	2명	'12.3.29. /4.9.	'12.4.13.	'11.8.1.
경북 봉화	'11.9.	'12.7.18.	991 / 5,667 (17.5)	23	-	60	2명	'12.7.31. /8.6.	'12.8.7.	'12.6.28.
경남 거창	'11.9.	'12.4.30.	695 / 18,822 (3.6)	19	9	60	1명	'12.6.4. /6.8.	'12.6.11.	'12.3.26.
경남 남해	'12.9.	'13.6.27.	441 / 6,937 (6.4)	15	7	36	1명	'13.8.13. /8.28.	'13.8.29.	'13.10.28.
충남 예산	'15.10.	'16.11.11.	1,180 / 8,486 (13.9)	20	11	24	2명	'16.12.20. /12.21.	'17.1.4.	'16.12.23.
충남 당진	'16.7.	'17.11.21.	945 / 10,695 (8.8)	7	16	24	2명	'17.12.20. /12.27.	'18.1	'20.6.26
강원 정선	자체추진	'17.12.20	723 / 2,136 (33.8)	8	8	60	4명	'18.3.5. /3.12	'18.3.16	'18.11.12.
충남 아산	'16.7.	'18.2.20.	526 / 8,556 (6.1)	2	1	36	1명	'18.7.5. /9.13	'18.10.29	'21.12.15
전북 완주	'15.10.	'18.3.24.	430 / 18,773 (2.3)	16	2	30	1명	'18.7.27. /8.14	'18.10.8.	'17.8.3.
충청남도	'15.10.	'18.12.4.	7개 시군	33	1	-	1명	'19.3.5. /3.20	'19.3.27	'19.2.20.
충남 금산	'17.8.	'18.12.13.	160 / 6,235 (2.6)	2	-	30	1명	'20.1.7. /1.30	'20.2.17	'21.12.30
전북 익산	'17.8.	'19.3.27	460 / 10,674 (4.3)	17	1	10	1명	'19.4.17. /4.30	'19.5.9	'18.11.23
충남 부여	'18.9.	'20.4.29	1,215 / 15,025 (8.1)	20	10	60	9명	'20.5.12. /5.20	'20.5.22	'19.9.26
전남 담양	'16.7.	'20.6.30	978 / 14,755 (6.6)	48	11	50	3명	'19.7.22. /8.7	'19.8.8	'19.2.1
강원 횡성	자체추진	'20.6.11	653 / 13,491 (4.8)	-	-	20	-명	'20.10.26	'20.6.29.	-
강원 춘천	'18.9.	'21.4.2	1,012 / 6,243 (16.2)	14	10	30	1명	'21.5.25. /6.2	'21.6.11	'20.11.5
경북 경주	'18.9.	'21.4.2	3,115 / 12,178 (25.6)	21	14	30	1명	'21.5.13. /6.7	'21.6.9	'24.11.21
경북 영덕	'17.9	'21.3.18	658 / 3,067 (21.5)	18	8	36	1명	'21.6.29. /7.12	'21.7.14	'19.12.11
경기 화성	'16.7	'21.3.15	1,245 / 30,881 (4.0)	7	15	360	1명	'21.11.1. /11.9	'21.11.19	'18.8.13
충남 논산	'16.7	'21.11.11	588 / 9,599 (6.1)	26	3	60	2명	'21.12.30. /22.1.6	'22.1.16	'23.7.10
충남 홍성	'19.9	'21.11.15	960 / 15,006 (6.4)	12	3	50	1명	'21.12.30. /22.1.6	'22.1.14	'21.9.30
경북 고령	'19.9	'21.12.10	460 / 5,894 (7.8)	14	6	24	2명	'22.2.25. /3.4	'22.3.30	'20.7.10
강원 양구	'20.7	'22.3.31	187 / 1,872 (10.0)	13	4	60	2명	'22.5.30. /6.16	'22.6.27	'22.3.3
전북 김제	'19.9	'23.5.2	395 / 7,704 (5.1)	19	1	60	1명	'23.9.22. /10.25.	'23.9.22.	'21.11.1

* 농어업인 수는 2020년 기준

* 미운영: 전북 진안·고창, 강원 횡성·양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